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마포구)

□ 민원 제목 : 대흥동 도로점용 허가조건(전신주 이설) 취소요청 관련 민원

□ 신청 취지

- 민원인이 카센터를 이전하여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득한 도로점용 허가 사항 중 전신주 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 민원인은 카센터 이전(△△동→○○동)을 위해 보행행정과로부터 '22.10.24. ~ '24.12.31.까지 도로점용허가(전신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22.11.30.까지 결과 제출)를 받았으나,
 - 한국전력 및 전문가에 확인한 결과 전신주 이설비용이 과다하고(3,700여만원) 통행에 불편을 해치지 않아 전신주 이전조건을 재검토하여 당초 대로 존치해 줄 것을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보행행정과 의견
 - '22.10.12. 민원인의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따라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전신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민원인의 의견과 마포경찰서 등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함
 - '22.10.24. 안전요원 상시배치와 점형보도블럭 및 블라드 설치 및 전신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22.11.30.까지 제출하는 조건부 도로점용 허가를 한 사항임
 - '22.11.30. 전신주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조건불이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사실관계

- 사업장 건물 현황
 - 규 모: 3층(근린생활시설 // 1층: 점포, 2층: 소매점, 3층: 점포)
 -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장 주변 현황

- 사업장은 (구)○○4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인근 지역일대가 '2020.12.24.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도로점용지역 민원현장은 지하철 2호선 □□입구역 2번출구로부터 1분 거리에 위치하고 ○○로와 ○○28길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진입로 도로 점용면적은 11.4㎡임
- 사업장 주변지역은 '20.2월 입주한 아파트단지 1,248세대와 '21.12.월 입주한 아파트단지 1,694세대가 위치함



□ 관계 법령 등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점용 허가)

□ 판단 및 결론

- 옴부즈만 판단
 - 보행행정과에서 '22.10.24. 도로점용허가 시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전신주 이설공사 시행하고 설치결과를 '22.11.30.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전신주 이설공사의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었음

- 전신주가 오래전부터 당초 위치에 위치하여 인도보행자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전신주 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봄
- 또한, 자동차관리사업 영업자에 대해 전신주 이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청문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필요하다고 봄
- 사업장을 이용하는 차량진출입에 대한 안전조치의 방법으로 도로 양쪽 차량출입방지시설과 경광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도 필요

○ 결론

관련 부서의 의견과 현장합동점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전신주 이설에 따른 과다비용과 전신주가 오래전부터 당초 위치에서 인도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이용해 왔고 전신주가 있는 도로 경계석 턱이 높아 전신주를 이설하여도 차량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신주 이설’ 조건은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주관 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진행시 참고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기 바라며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및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예상되는 보행인의 안전통행을 위해 차량의 도로출입방지 시설 및 경광등 설치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